

□ 전형별 가산점 기준 및 제출 필요 서류

구 분	관련법령 및 규정	증빙서류	가점	전형별 가점적용		
				서류	팔기	면접
취업지원 (국가보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·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·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·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·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및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·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	·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	만점의 5%~10% (증명서상 가점비율)	○	○	○
의상자	· 「의상사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의상자	· 의상사자 증명서	만점의 5%	○	○	○
장애인	· 「장애인 이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	· 장애인 증명서				
북한 이탈주민	·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의한 북한이탈주민	·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				
다문화가족	·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가족관계증명서 ·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· 부모 또는 배우자(귀화 허가를 받은 자) 명의의 기본증명서(혼인한 외국인의 전 국적 표시) ·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(결혼이민자) 				
한부모가족	·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	· 한부모가족 증명서				
청년미취업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에 의한 청년 미취업자 *공고일 전일 기준 34세 이하 **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상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중 하나라도 사업장으로 가입되어 있으면 취업자로 간주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주민등록초본 ·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서류 발급처 :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※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공고일 전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만 인정함				

※ 가산특전 유의사항

1. 가점점수에 대한 증명서를 전형별 입력 및 제출한 경우 각 전형별 상기 기준에 따른 가점 부여
※ **관련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만 인정 (증빙 관련 카드 등 불인정)**
2. 우대사항 중복 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
3. 득점한 과목 중 한 과목 이상의 점수가 만점의 4할 미만이거나 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시험에는 가점 미부여
4. 취업지원대상 가점 적용 기준
 -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 미적용
(단,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적용)